

언론과 법

국내동향

해외동향

해외통신원 보고

PAC

● ● 국내동향 ● ●

언론중재위원회, 서울대 로스쿨과 공동토론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서울대 로스쿨과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오보 대응 기피와 조정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세션에서는 ‘정부정책 관련 보도와 언론조정’이라는 소주제로 한 고위공무원의 현직 업무에 관한 발언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소속 정부기관이 언론조정 신청을 한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보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므로 정부기관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그렇게 되면 언론사는 공무원 개인과 소속 정부기관에 대하여 두 번 정정보도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4중재부 임병렬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정부기관이 먼저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아직 정정보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무원 개인 또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있다. 하지만 이미 정부기관이 청구한 정정보도가 이뤄진 상태라면 공무원 개인이 그와 동일한 취지로 정정보도를 청구한다면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세션에서 토론자들은 ‘로스쿨 관련 보도와 언론조정’이라는 소주제로, 로스쿨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당 보도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로스쿨 관련 해당 보도들이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기초해 기본적인 확인도 없이 보도되었음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관련 사실의 세부 내용에 약간의 오류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

기는 하나 해당 기사에 제시된 전체 내용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 정정보도를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김문중 조사관(변호사)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이라면 기각사유가 될 수 있고, 해당 보도는 로스쿨생 개개인을 표시하지 않고 집단을 표시했기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을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정민 조사관은 “로스쿨 학생 개개인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 인정되긴 어렵지만 각 로스쿨이나 로스쿨생을 대표하는 단체의 명의로는 반론청구가 가능해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20여명의 학생과 언론인, 교수, 중재위원 등이 참석하여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홍악법 신상공개 찬반논란 가열

최근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홍악범죄의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를 두고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통영 초등학교 살해사건, 올레길 여성관광객 토막 살해사건 등의 보도에 있어 일부 언론은 피의자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실명과 함께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되기에 공개가 정당하다는 목소리와 여론에 의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공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누구에게나 인권은 지켜져야 하지만 잔인한 살인, 반인륜적 범죄, 미성년자 대상 강력 범죄 등 극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공개를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범죄를 자백했다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따라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며, 언론에 의해 이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의자의 가족 또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관한 관련 법률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이 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가 누구인지 공표해서는 안되지만 당국이 공개수사를 하는 경우나 행위자의 특성상 사회적 중요성을 지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키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예외로써 흉악범의 신상공개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강력범죄사건의 범위 및 흉악범의 기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방송인 한성주, 기자 상대 명예훼손 소송 ‘일부 승소’

방송인 한성주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였던 크리스토퍼 수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했다는 이유로 스포츠일간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4911)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성주는 허위사실 및 실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가 침해됐다며 2012년 1월 18일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4부(재판장 노만경 판사)는 6월 13일, 기자 1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국내 유명 방송인으로서 공인에 해당하고, 그 보도의 내용이 공인인 원고와 크리스토퍼 수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다는 것인 이상, 원고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원고의 외도가 종전 배우자와의 이혼사유이었고, 원고가 가슴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금전적인 스폰서가 있다는 점에 관한 전 남자친구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부분은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원고가 불쾌감을 가질 사항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기사가 설령 일반 독자에게 ‘크리스토퍼의 주장사항이 진실이다’는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토퍼의 주장이 무엇인가’라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전 남자친구의 주장이 일반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결국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원고 일부 승소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 방송통신위원회의 사고방송 명령 및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 및 인터넷게시판의 ‘본인확인제’에 대해 각각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08년 12월 MBC의 <뉴스 후> 프로그램이 방송법 개정 문제에 관해 보도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를 하였다. MBC

는 이 같은 제재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09구합159698호), 서울행정법원은 직권으로 구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2009헌가27)을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2년 7월 23일 재판관 7[위헌], 1[합헌]의 의견으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중 '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사과여부 및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송사업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사과인 것처럼 그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명되었다. 이는 시청자 등 국민들로 하여금 방송사업자가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을 저버린 방송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으므로 방송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해당 법안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제재수단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등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가 ‘주의 또는 경고’ 등 다른 제재조치에 비하여 시청자의 권익보호나 민주적 여론 형성 등에 더 기여하거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대 헌법재판관은 “법인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창설된 법인격의 주체여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없고, 그 행동영역도 법률에 의해 형성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그 성질상 법인에게서는 적용될 수 없다”며 반대의견(합헌)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해서

는 전원일치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2007년 7월 무분별한 인터넷 악플을 막기 위해 도입된 본인확인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대해 ‘인터넷 미디어오늘’과 참여연대, 손모씨 등이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2010헌마47, 2010헌마252)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제는 인터넷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정보 게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고, 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본인확인제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일본동향 ● ●

번역 : 한동원(전 한국언론연구원장)

히로시마지법, 살인범의 사진 게재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인정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에서 1999년 발생한 모자(母子)살해사건을 둘러싸고 당시 18세였던 범인이 자신의 실명을 기록한 책의 저자와 출판사에 대해 출판금지위와 1,3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히로시마지법은 2012년 5월 23일 출판금지청구는 기각하

면서 얼굴 사진 등을 게재한 것은 원고의 프라이버시권 및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지적, 저자에게 66만엔의 배상을 명했다.

신문협회보 6월 12일자 보도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에 출판된 「후쿠타군을 죽여서 무엇이 되나」의 저자인 마스타 미치코와 출판사 '인시덴츠'의 티라자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책에는 원고의 실명, 얼굴 사진 등이 공표돼 있었다.

재판부는 출판금지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원고가 출판 당시 28세였으며 이미 사형판결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더욱이 실명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하여 “중대한 손실의 우려가 있거나 회복이 불가능하고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측은 모두 6월 5일 항소를 제기했다.

오사카지법, 수사검사의 추측성 발언 상당성 근거될 수 없어

오사카부 히라카타시의 청소공장 건설을 둘러싼 담합사건의 기사와 관련해 나카츠카사 시장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닛케이신문사를 상대로 1,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오사카지방법원은 2012년 6월 15일 기자의 취재활동이 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명예훼손을 인정, 닛케이신문 측에 600만 엔의 배상을 명했다.

신문협회보 7월 3일자 보도에 의하면, 문제가 된 것은 2007년 7월 6일자 조간(오사카판)에 보도된 「시장, 빈번하게 접대 받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나카츠카사 시장이 이미 체포된 대기업 건설업자인 오바야시구미 고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접대를 받았으며, 때때로 건너뛰기는 했지만 거의 매월인 때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나카츠카사 시장은 한번 회식을 가졌다고 인정하면서 그 때의 식사 대금은 참가자 각자가 부담했으며,

장기간에 걸친 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닛케이신문 측은 당시 검사들을 취재한 결과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등의 회답을 얻었으며 이를 의심할 사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식을 무조건 접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후 검사의 발언은 “주관적인 인식일 뿐이며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당사자나 수사관계자에 대한 추가적인 취재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극히 빈약한 취재결과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닛케이신문은 19일, 나카츠카사 시장은 29일에 각각 항소했다.

후쿠오카지법, 경찰 요청에 따른 조폭 내용 만화책 편의점 판매중단 위법하지 않아

후쿠오카현 경찰이 현대의 편의점에 대해 폭력조직을 내용으로 한 만화 등의 판매 중지를 요청한 것을 두고 작가인 미야자키 마나부가 현을 상대로 5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후쿠오카지방법원은 2012년 6월 13일 경찰의 요청이 서적의 판매중지를 강제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 청구를 기각했다.

미야자키는 표현의 자유 외에도 후쿠오카현 경찰이 자신의 저작을 원작으로 한 만화를 포함한 판매중지 서적의 리스트를 작성·배포함으로써 작가로서의 명예가 손상되었으며 인격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출판사로부터의 집필 의뢰가 줄어들어 약 1,000만 엔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도 청구했다.

후쿠오카현은 “요청에 따라 리스트를 전달한데 불과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편의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리스트는 미야자키의 이름이나 원작을 거명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후쿠오카현 경찰은 2009년 12월부터 청소년들이

폭력조직에 대해 잘못된 동경심을 갖는다는 이유로 편의점들에 관련 서적의 퇴거 등 적절한 취급을 요청했으며, 편의점들은 해당 서적들을 점포에서 퇴출시켰다.

재판부는 “관민이 일체가 되어 폭력조직 척결에 임하고 있는 사회적 풍조 하에서 요청을 받은 편의점들이 자율적으로 서적을 퇴출시킨 것은 하등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야자키는 6월 16일 항소했다.

지시통신, 사장 포함 8명 오보작성 책임 중징계

일본의 한 통신사가 오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자는 물론 차장, 부장, 편집국장, 편집담당 임원, 사장에 계까지 중징계를 내렸다.

신문협회보 2012년 7월 3일자 보도에 의하면, 지지(時事)통신사는 2012년 6월 29일 자사의 기사에 ‘워싱턴교도’라는 크레딧을 붙여 오보를 작성한 워싱턴 특파원에게 1개월의 휴직처분을 내리고 총무국 소속으로 전출시키는 등 사장과 편집국장을 포함한 8명을 징계처분했다.

징계내용을 보면, 나카다 마사히로 사장이 사임하는 것 외에 편집담당 임원이 2개월 보수 반납, 편집국장 감봉 1개월, 편집국차장, 편집국총무 겸 정리부장, 외신부장, 워싱턴 지국장 등은 견책했다. 또한 기사의 체크를 담당할 외신부차장과 정리부차장은 평사원으로 강등시켰으며, 워싱턴 특파원은 총무국 소속 직원, 정리부차장은 편집국 외의 부서로 변경하는 등 중징계를 단행했다.

●● 미국동향 ●●

범인 사진·실명 관련 오보, 경찰 자료 문제였다면 면책

경찰 자료를 토대로 무고한 시민을 강도피의자인 것처럼 잘못 보도한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지역신문인 로렌스 카운티 에드버타이저(Laurens County Advertiser)는 2009년 7월 15일 한 강도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상반신 사진과 함께 실명(에드워드 브루스터)을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된 사진과 실명은 실제 피의자(테디 브루스터)가 아닌 그의 형이었다. 에드워드는 언론사가 실수로 자신을 강도로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는 경찰에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보도했을 뿐이라며 면책을 주장했다. 경찰이 강도 용의자로 같은 달 10일 체포된 테디 브루스터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고 연년생인 그의 형 에드워드의 정보를 잘못 제공하여 발생한 문제였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방법원 애디 주니어 판사는 “기자는 이러한 정보를 신뢰할만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피고에게 관습법상의 또는 헌법상의 악의(惡意)가 있었다는 증거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했고, 기사가 원고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경솔하게 행동했거나, 경찰서에서 잘못된 이름을 고지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결론적으로 해당 기사에는 공정한 보도에 적용되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며, 피고는 법적인 책임을 면제받는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밝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네소타법원, 자살 정보 제공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아

7월 17일 MPR(Minnesota Public Radio) News는 온라인에서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모아 자살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준 것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미네소타 고등법원

은 같은 날 인터넷 상에서 자살 희망자를 부추겨 자살하게 한 윌리엄 멜처트 딘켈(William Melchert-Dinkel)에게 원심의 실형을 확정했다.

딘켈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온라인에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우울증, 자살 충동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내 자신을 여성 간호사로 소개하며 가까워진 후 그들에게 자살방법을 자세히 알려줘 자살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딘켈은 2005년 목을 매 숨진 영국 코벤틀리의 32세 마크 드라이브브로와 2008년 얼어있는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한 캐나다 브램프톤의 18세 나디아 카조우지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6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딘켈은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법률적으로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행위가 단지 글로 이뤄졌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여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딘켈의 변호사 테리 왓킨스는 미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

● ● 영국동향 ● ●

영국기자연맹, 법적 구속력을 갖는 언론 규제기관 창설 지지

영국의 기자연맹(National Union of Journalists; NUJ)이 언론사들에 대한 자체 규제를 개선하자는 언론사들의 계획안을 거부하고, 그 대신 법적 권한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 규제기관을 요구한다고 레버슨 청문회에서 밝혔다.

NUJ 사무총장 미셸 스테니스트릿(Michelle Stanistreet)과 NUJ 윤리위원회 의장 크리스 프로스트(Chris Frost)는 “PCC(언론고충처리위원회)는 언론

규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 원인은 업계가 키워낸 PCC의 구조에 있다. 지난 40년 간, 다양한 형태의 자체 규제를 시도했으나, 모조리 실패했다”고 말했다.

스테니스트릿은 PCC 의장이 기획한 자체 규제 시스템 방안에 대해서도 “별로 새로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결론을 내야 하는데 NUJ는 크게 실망하고 있으나, PCC를 개혁하기 위해 20년 이상 노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규제 기관을 뒷받침하는 법적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는 새로운 규제기관이 누구를 규제하게 될 것인지, 운영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제기관은 모든 상업 언론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그 어떤 언론사도 규제를 피해갈 수 없어야 하며, 유료 가입을 거부할 수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법률을 개정해서 회원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거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우리 NUJ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이런 방안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프로스트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다른 영리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사는 범죄, 거짓말, 부정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없다. 언론의 자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수호해야 하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의회가 민주적으로 합의한 형태로 보장되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 기관은 자유로운 표현과 언론의 자유 수호를 강화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게 매체를 감독하면서, 해당 매체가 자체 업무 감독과 조사, 그리고 민원 제도를 통해 자신의 활동에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 기관은 어느 정도 법적인 지원을 받아야 웹사이트, 그리고 출판 매체와 그 홈페이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매체를 대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처, 3년 동안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리

2012년 7월 6일 네이처(Nature)지가 이집트 과학자 무하마드 엘 나치(Mohamed El Naschie)와의 3년 동안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리했다. 네이처측 변호사는 이집트 과학자가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예훼손 법률 개선 활동가들은 이번 소송이 3년이나 계속되었고, 재판에 소요된 시간도 4주가 넘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엄청났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현재 영국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명예훼손 개정 법안에 공익 보호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법원 영장 원본에 따르면, 엘 나치는 질이 떨어져 어디에도 게재되지 못한 자신의 여러 편의 논문에 대해 자신의 편집 특권을 사용해 자비로 다시 출판했다는 네이처지의 기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 사건을 심의한 샤프 판사는 2008년 11월호 네이처에 게재된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엘 나치 교수의 청구를 기각하고, 변론의 타당성과 진실성 그리고 공공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의 레이놀즈 특권(Reynolds privilege)을 인정했다.

국제법 로펌 테일러 웨싱(Taylor Wessing)에서 미디어법을 담당하는 변호사 나리 샨(네이처측 변호사)과 네이처의 발행인 맥 밀란, 그리고 언론인 퀴린 쉬어마이어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승리이고, 공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특권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런 문제를 법정에 끌어들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과학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법률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현행 법률은 과학에 관한 논의를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네이처의 편집장 필립 캠벨은 “네이처는 지난 3년 동안 이 기사를 맹렬하게 방어해 왔다. 저널리즘

이 정직하고 정당하며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법률 개혁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과학 감각(Sense About Science)’의 트레이스 브라운은 “정부가 발표한 법안은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3년이나 전투를 벌여야 하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낸다. 명예훼손 법률은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이 가능한 사회를 원하는 것인가? 정부는 이를 악물고, 약속한대로 언론의 자유를 더욱 확실하고 현실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공익 방어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명예훼손 법률 개혁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검열지수(Index on Censorship)’의 크리스티 휴즈도 “법안은 크게 2가지의 심각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공익을 적절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적인 과학적 토론과 정치적 토론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기업이 개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시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개의 의회 위원회에서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워지도록 조치할 것을 거듭 요구했는데도 이를 무시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로 잡고, 명예훼손 소송을 브랜드 보호를 위한 일종의 마케팅 비용으로 간주하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영국 카이로프랙틱 협회(British Chiropractic Association)를 상대로 격렬한 전투를 벌였던 사이먼 싱은 “내가 경험한 사건과 약물에 관해 글을 썼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여러 명예훼손 소송은 명예훼손 법률 개혁 운동이 촉발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 상정된 명예훼손 개정 법안

은 언론이나 블로그에서 약물, 과학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공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기업이 비판세력을 위협해 입을 틀어막는 상황을 규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법률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 ● 프랑스동향 ● ●

김이정(서강대 프랑스문화학 강사)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 자신의 수영복 사진 게재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일부 승소

시사주간지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le Nouvel Observateur) 9월 5일자 기사에 따르면,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가 자신의 수영복 사진을 게재한 연예정보 주간지 VS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파리경죄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2천 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마리 소테로 판사는 “대중의 합법적인 정보지가 브레강송 해변에 있는 영부인의 사진을 본인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었으며, 특히 수영복 차림으로 카메라 렌즈 앞에 서는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녀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들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는 없다”고 초상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에 관한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레리의 요구를 완전히 다 들어주지는 않았다. 발레리가 VSD의 ‘악의’와 ‘고의’를 주장했다 때 재판부는 그녀가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미디어 노출을 모색한다고 넌지시 암시하면서 “그런 식의 사고는 기자의 사고방식에 해당”하며, 이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사실에서 그녀에게 훈계해도 된다고

민은 해당 잡지의 ‘해를 끼치려는 의지’를 그녀가 문제 삼았을 때, 재판부는 “이 위험한 발언들이 합법적으로 그녀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보상해야 할 만한 잘못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의 대표적인 주간지인 파리마치도 소송을 초래할 수 있는 사진들을 게재했지만 발레리는 제소하지 않고 참고 있다. 파리마치의 정치부 기자인 발레리는 자신의 고용주를 공격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법정에서 언급했다.

VSD의 변호인 조제 미셸 가르시아는 VSD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고, 발레리는 9월 7일 다른 연예잡지 3개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 기자들에 대한 편집실 출입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레지프레스 7/8월호 기사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5월 10일 기자들의 편집실 출입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한 두 명 중 한 명은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프로덕션 배급사인 Tele M과 시청각 프로그램 프로덕션사인 Radio M Plus를 창립했다. 그는 창립 7년 후 정치적, 재정적 압력으로 인해 Radio M Plus를 매각해야만 했다. 그가 여전히 회사의 대표로 있던 Radio M Plus사는 당시 Tele M사와 공동 출자하여 라디오 프로그램 프로덕션과 배급에 관계된 단체를 설립했다. 그런데 청구인인 Radio M Plus의 대표와 두 번째 제소자인 여기자가 Tele M의 다른 이사들에 의해 라디오 방송국의 편집실 출입을 저지당했다. 법원이 Tele M사에 그들의 Radio M Plus사의 편집실 출입을 허락하라는 최종 판결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자 두 청구인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그들은 유럽인권조약 제10조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기자 활동을 하던 라디오 방송국의 편집실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제3자들에게 명령하는 법적 최종 판결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당국이 청구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 당하는 데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당국이 타인의 부당 개입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줄 잠재적 보호 의무를 준수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해당 사건이 재판소가 민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는 직업 활동의 방식에 관계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는 다원주의의 최후 책임자이며 그러한 국가의 역할은 과거 루마니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언론의 자유가 정치인과 경제적 권력자에 의해 행사되는 외부 압력으로 고통 받을 때 더더욱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따라서 법적 판결의 이행에 있어 청구인들을 돕기 위한 효과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기관은 유럽인권조약 제10조를 위반했다고 유럽인권재판소는 인정했다.

●● 기타 국가동향 ●●

이탈리아 의회, 언론인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감된 후 명예훼손법 개정 요구에 직면

이탈리아 의회가 기자와 전직 신문사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후, 명예훼손법을 폐지하라는 요구에 직면했다.

표현의 자유 캠페인 그룹 'Article 19'는 이탈리아 남부 타이롤의 볼차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문사 알토 아디제의 기자 오르페오 도나티니와 전직 간부 티지아노 마스의 구속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2명을 대상으로 형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볼차노 지

방의회 의원인 스벤 크놀이었다. 그는 2008년 알토 아디제 신문에 게재된 도나티니의 기사가 자신이 발 파 시리아에서 개최된 네오 나치 정상회담에 참석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rticle 19에 따르면, 이 정보는 경찰 조서를 통해 입수된 것으로, 국영 주간지 르에스프레소(L'Espresso)에 처음 게재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크놀은 알토 아디제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도나티니와 마스에 대해 볼차노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검사의 요청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볼차노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고 올해 6월 20일, 볼차노 법원은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15,000유로(11,800파운드)를 선고했다.

Article 19는 형법의 명예훼손 조항을 폐지하고 표현에 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이탈리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우리는 형법에 명예훼손 처벌 조항이 존재하고 있고, 이번 사건에서처럼 이런 조항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는 이탈리아가 유럽 국가들 가운데 언론인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는 마지막 2개국의 하나라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의 창립 멤버인 이탈리아가 낡고 반민주적이며 부당한 형태로 언론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나머지 하나는 벨로루시인데, 현재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럽 의회 가입이 보류되고 있다. 2011년 키에티 법원이 언론인 발터 네론, 라탄치오, 비시난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를 비롯한 최근의 상황은 입법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얀마, 중앙언론위원회 설립

미얀마가 ‘중앙언론위원회(Myanmar Core Press Council;MCPC)’를 설립했다.

MCPC는 연방의회(Py idaungsu Hluttaw)가 제정하는 언론매체법(Press Media Law)에 따라 조직될 미얀마 언론평의회에 임무를 이양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미디어 분쟁을 규칙,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또한 미얀마의 현 실정에 맞는 언론평의회 법안을 마련하고, 국제적 규범과 지역·해외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검토한 뒤 해당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며, 언론분야에 관해 정부 측에 자문을 하는 등의 임무 또한 수행할 것이다. 운영재원은 기자협회, 작가협회, 출판협회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MCPC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사무 인력과 장비를 제공한다.

1962년 제정된 인쇄업자 및 출판업자 등록법과 정부의 12가지 항목에 관한 검열정책이라는 정부의 규제 아래 언론을 사전 검열해왔던 미얀마는 5월 14일, 사전 검열제도를 폐지하고 6월 MCPC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이를 위해 2012년 5월 18일 미얀마 언론감독 및 검열위원회(Press Scrutiny and Censorship Board;PSCB)의 임원들과 세 곳의 주요 미디어 협회인 미얀마 기자협회(Myanmar Journalists Association;MJA), 미얀마 기자네트워크(Myanmar Journalists Network;MJN), 미얀마 기자연합(Myanmar Journalists Union;MJU) 등이 미얀마의 수도인 랑군(Rangoon)에서 모여 미팅을 가지는 등 창설을 위한 논의를 거쳤다.

또한 2012년 8월 9일 미얀마 정부는 위원장 우킨 마웅 아예(U Khin Maung Aye) 전 대법원 판사를 비롯한 MCPC를 구성할 20인을 확정 발표했으며 8월 20일엔 모든 매체의 사전 검열 중단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미얀마 언론은 사전 검열 중단에 대해서는 환영 의사를 밝혔으나, 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미얀마의 일레븐 미디어 그룹(Eleven Media Group;EMG)은 구성원 중 군사정권의 핵심중

역이었던 친정부주의자 및 미디어 분야의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구성원들간의 충돌이 많을 것이라고 비평했으며, 기자들은 미디어분야의 교수들과 현직 기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몸통이 만들어졌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미얀마의 언론의 자유가 한 단계 발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해외통신원 보고 ●●

송동현 통신원
(런던 Goldsmiths College Media & Communications 박사)

레버슨 청문회 종료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의 폰 해킹 스캔들로 시작된 레버슨 청문회가 1,2,3부에 걸친 증인 출석 청문회를 7월 24일 모두 끝마쳤다. 레버슨 판사의 청문회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표가 올해 가을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문회가 각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영향들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레버슨 판사는 청문회의 발단이 되었던 언론기관의 부패를 조사하기 위해 신문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고, 과거 신문사들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레버슨 청문회는 신문업계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뉴스오브더월드의 살해당한 10대 소녀 밀리 도올러 폰 불법 해킹사건, 4개월 전 스위스 코치 버스 사건으로 사망한 세바스찬 가족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메일(Mail)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영국 신문업계에 만연한 비윤리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한 전직 뉴스오브더월드의 에디터였던 폴 맥멀런은 청문회에서 ‘(기사와 관련한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고려는 유아기적 발상이며, 21년 기자생활 동안 사람들의 사생활에 신경 쓰는 기자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뉴스오브더월드 기자들은 지속적으로 편집장인 레베카 브룩과 전직 편집장이자 데이비드 카메론 수상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였던 앤디 콜슨을 위해 폰 해킹을 자행했다고 진술하며 영국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레버슨 청문회는 런던경찰국(Scotland Yard)과 정치인들을 곤경에 빠트린 이벤트였다. 청문회 이전에 이미 두 명의 경찰 고위 관계자가 폰 해킹과 연루되어 사직했으며, 한명의 경찰청 직원이 4개월 전에 사직했다. 청문회를 통해 두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들이 선지에 특혜 취업했음이 밝혀졌으며, 경찰 간부들이 타블로이드 뉴스기자들에게 사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대가로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도 드러났다. 고위 정치인 사들도 곤욕을 치른 것은 마찬가지이다. 데이비드 카메론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뉴스오브더월드 편집장이었던 레베카 브룩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해명해야 했고, 전직 수상인 고든 브라운과 토니 블레어 또한 입기 중 루퍼드 머독의 지지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강변을 늘어놓아야만 했다. 청문회로 인해 정치계를 떠나야 했던 앤디 콜슨과 루퍼드 머독의 BSkyB 독점인수를 도우려 했던 문화부 장관과 비서인 제레미 헌트 에 대한 법의 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레버슨 청문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사후처리를 두고 경찰청은 언론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율과 규범을 만들 것이고, 정치계도 언론계와 거리두기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반면 신문업계는 청문회에서 계속 주장되어온 PCC 폐지 및 신설 기관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정부 주도의 규제기관 신설에는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관련, 레버슨 판사의 최종 보고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정치·경찰·언론의 관계 변화와 더불어 레버슨 청문회가 언론보도 관행에 미친 변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올해 5월 대비 명예훼손 관련 소송건수가 지난 3년 평균에 비해 15% 감소했다. 이는 71건을 기록하였던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기록(84건)이었다. 전통적인 미디어 회사들은 같은 기간 27건의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자격으로 법정에 섰으며, 이는 5년간 최저 수준이다.

가디언(Guardian)지의 변호사였던 커리 듀오두(Korieh Duodu)는 ‘폰 해킹 스캔들로 불거진 감시의 눈들로 인해 언론업계가 판매를 위한 윤리규정 위반의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사건보도 관련 윤리적 물의를 적게 일으키는 것으로 편집방향을 세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이 감소할 전망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레버슨 청문회의 영향으로 여겨지는 것 중 다른 하나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의 언론 출간물에 대한 소송형태의 변화이다. 이들은 과거와 달리 미디어 출간물에 대해 명예훼손법에 호소하기보다는 사생활침해 금지명령에 근거한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생활침해 금지명령은 출간된(출간 예정된) 기사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이 출간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원의 명령이며, 명예훼손 소송은 이미 출간된 기사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3부로 구성되었던 레버슨 청문회는 80주 동안 650명의 증인 출석 및 6,000페이지 분량의 증거 자료를 생산해내며 공개청문회를 모두 마감했다. 독립기소 위원회(The Crown Prosecution Service)는 폰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8명을 19가지 혐의로 기소한 상태이다. 앞으로 나올 레버슨 판사의 최종 보고서와 카메론 수상의 결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변화의 기로에 놓인 21세기 초 영국 언론업계의 현 상황은 영국의 미디어 역사에 두고두고 비극으로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법원, 사법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블로깅(Blogging) 지침 전달

영국 법원은 8월 13일 사법공무원들에게 블로그에 올

리는 글에 대한 지침을 일괄 전달하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법원이 발행·전달한 블로그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유지를 위해 사법부 소속의 구성원으로서 블로그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자신을 사법부 소속이라고 밝혀서는 안 된다.

2. 또한 자신의 직업을 알아챌 수 있는 어떠한 개인적 생각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법공무원이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 그들의 사법인으로서의 공정성뿐 아니라 사법부의 공정성에도 손상을 끼치기 때문이다.

3. 이러한 가이드는 익명성을 기본으로 하는 블로그도 포함된다. 이는 블로그 이용자의 신원에 대한 익명성 보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4.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법공무원 또한 지침에 따라야 하며, 기존에 작성한 글이 이에 반하는 경우는 삭제해야 한다.

5. 트위터와 링크드인을 이용하여 판결사례를 토론·상답하는 파트타임 사법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된다.

6.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7. 모든 사법공무원에게 곧 출간될 The New IT and Information Security Guidance를 숙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지침의 발표로 법관들의 블로그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규율의 현실적 효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규율 조항에 대한 비판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UK Human Rights Blog 편집장인 아담 와그너는 법률과 관련한 유명한 블로그 중 사법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블로그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법원이 발표한 블로그 지침을 비판하였다. 가디언 법조계 담당 루시 리드는 이러한 지침이 현재 법조계가 온라인 사용 실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루시에 따르면, 많은 사무변호사(solicitor)가 법정변호사(barrister)를 겸직하고 있으며 자신들

의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연계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로펌들 또한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규율의 비적절성을 꼬집었다. 블로그나 트위터에 연계된 이들의 웹사이트에는 변호사들의 약력 및 판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법부 소속'이라는 것을 비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요지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규정은 링크드인과 같은 직업 프로페셔널리즘에 근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을 금하는 처사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온라인과 관련한 법조계의 이전 규율로는, 사무변호사 단체에서 2011년 제시한 소셜 미디어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SRA(Solicitor Regulation Authority) Code에 근간한 신뢰, 변호사가 속한 로펌의 대표성, 법률 서비스 규정 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의견개진이 허용되고 있다. 법원에서 이번에 전달한 지침이 사무변호사 단체에서 2011년 만든 소셜미디어 활용법보다 현실성이 더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듯 보인다.

전 영국축구대표팀 감독 스티브 맥클레런 훈외정사 관련 출간금지신청 기각

영국 고등법원은 8월 19일 전 영국축구대표팀 감독 스티브 맥클레런(Steve McLaren)이 선(The Sun)지를 상대로 낸 출간금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선지는 맥클레런의 훈외정사를 커버스토리로 같은 날 일요일판 신문을 출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이에 맥클레런은 커버스토리 출간 금지신청을 위해 고등법원에 11th hour bid를 제기하였다. 11th hour bid는 소송인이 사건에 대해 늦게 알았을 경우 혹은 늦게 대응을 결정하였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언급하는 것으로써 보통 급박한 정치·외교 및 신문기사 보도 중지와 관련해 법원에 내

는 신청을 의미한다.

맥클레런의 제소 근거는 사생활침해 금지명령이었다. 급박한 소재기로 토요일 저녁 1시간 동안 전화를 통해 심리를 마친 고등법원은 맥클레런의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기각 사유는 맥클레런은 전 영국 축구대표팀 감독이라는 영향력 있는 공인이기에 프라이버시보다 신문기사 출간을 통한 공중의 관심충족에 더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었다. 타블로이드지에서 타인의 성적 이야기를 다루는 키스 앤 텔 스토리(kiss and tell story)를 지양·완화하기 위해 최근 이러한 금지명령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졌기에 이번 결정은 의외라는 분위기다.

이와는 반대로, 선지는 맥클레런의 혼외정사 이야기는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자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자축했다. 선지의 편집 매니저인 데이비드 딘스모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인권법 제8항 사생활 보호권과 제10항 표현의 자유를 잘 판단한 경우이며 법원이 우리 손을 들어주었다’고 자평했다.

선지의 맥클레런 간통사건에 대한 기사는 출간 후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8월 19일자 신문 1면을 이용한 선지는 맥클레런과 내연녀 사이마 안사리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는데, 사이마는 역시 전 영국축구대표팀 감독이었던 스벤 고란 에릭슨과도 내연의 관계에 있었다고 알려졌다. 일요일 선지의 출간 전까지 맥클레런 부인은 그의 간통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맥클레런은 이를 일요일 오전에 고백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런던올림픽 수영선수에게 모욕적 트윗을 보낸 소년 체포

톰 데일리(Tom Daley)는 남자 싱크로 다이빙 금메달 유망주로서 시합 전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었고 미디어 또한 데일리와 시합 전 많은 인터뷰를 했었다. 데

일리는 인터뷰 때마다 “메달획득은 어릴 적부터 나와 아버지의 꿈이었으며, 나는 나와 아버지를 위해 경기를 하겠다. 메달획득은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일이 될 것이다”는 각오를 종종 언급하였다. 톰 데일리의 아버지 롭 데일리는 2011년 5월에 사망했고, 톰 데일리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대중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데일리는 2012년 7월 30일 남자 10미터 싱크로 다이빙 경기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에 실망한 대중들 중 트위터를 통해 데일리에게 욕설이나 비하적 언어를 사용한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비방적 트위터를 보낸 사용자 중 악의적 통신 혐의(suspicion of malicious communications)로 웨이머스 지역에 거주하던 17세 소년을 체포했다. 이 소년은 트위터를 통해 데일리에게 ‘너는 네 아버지를 실망시켰어! 그건 너도 알아야’라는 트윗을 보냈으며, 경찰은 이를 악의적 통신 혐의로 판단, 체포한 것이다.

체포의 근거 법령은 Malicious Communications Act 1988인데, 이 법령은 ‘송신인이 의도적으로 고통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서를 수신인에게 전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0파운드(한화 약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Malicious Communications Act 1988은 오프라인 편지 형식의 글에 관한 법령이므로 공격적 내용의 메시지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할 경우도 규율할 수 있는냐이다.

현재 영국은 트위터는 메일과는 다르게 모두가 접근 가능한 방송과 같은 매체라는 기본명제를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는 추세에 있다.